

울산광역시 중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명녀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2443 |
|----------|------|

발의연월일 : 2025. 6. 30.

발의자 : 이명녀, 박경흠, 김태욱,
안영호, 문기호, 홍영진,
정재환, 김도운, 문희성,
강혜순

1. 제정이유

혼인, 임신, 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중단되었거나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지속을 지원하고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력보유여성등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안 제3조)

나.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다. 구체적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업무의 위탁,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다. 「울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라.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7조

5.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2025. 6. 16. ~ 6. 23.(7일간) / 의견없음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또는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경력보유여성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또는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등)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기본계획과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현황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2.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 알선 사업
3. 창업지원 및 컨설팅 사업
4.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및 기업 지원
5.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관계 기관, 기업,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제275회-복지건설위제2차부록)

제9조(포상)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기업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경력

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군,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6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 친화적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 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
 4.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 동 조례안은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우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3. 작성자

- 소 속: 가족복지과
- 직 급: 사회복지 7급
- 이 름: 전윤선
- 연락처: 052-290-4903